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3682
------------	------------

제안년월일 : 2026년 6월 17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본 개정안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 개정 대상 조항 번호를 안 제5조의2제3항제4로 바로잡고, [별표 3]의 '1. 체육 시설 나. 기타' 및 '2. 주차시설 나. 기타' 감면 대상 항목에 '임산부' 및 '임산부 탑승 차량'을 각각 신설하고 공식 증빙 서류 제시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타 유사 대상(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1)에 따른 임산부를 추가함.(안 제5조의2제3항제4호)
- 나. [별표 3]의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감면 대상 항목에 '임산부' 및 '임산부 탑승 차량'을 추가하고, 각각 50% 감면율을 적용토록 함.(안 [별표3])

1)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제3항제3호의 호 번호를 제4호로 하고, 본문 중 “임산부분인”을 “임산부”로 한다.

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100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50
6.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50
7.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단, 임산부 애플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8.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9.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1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50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100
3.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65세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80
9.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0.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50
11.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	50
12.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20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4. 18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

5. (생략)

④ ~ ⑥ (생략)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100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50
6.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50
7.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50

개정안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3. -----

-----<

한함)	
8.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9.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50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100
3.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80
9.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0.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50
1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20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차요금의 경우 50)

※ 비고: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례」에 따른 임신부(단, 임신부 애플카드 등 임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에 한함)	
8.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9.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1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50

※ 비고 : (개정안과 같음)

2. 주차시설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100
3.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80
9.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0.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50
11. 「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신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신부 애플카드 등 임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	50
12.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20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차요금의 경우 50)

※ 비고: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4호 중 “발급대상자”를 “발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100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50
6.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50
7.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단, 임산부 애플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8.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9.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1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50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100
3.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65세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80
9.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0.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50
11.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	50
12.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20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② (생략)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18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	4. ----- ----- ----- ----- ----- 발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	나. 기타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대상</th><th>감면율 (%)</th></tr> </thead> <tbody> <tr> <td>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td><td>100</td></tr> <tr> <td>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td><td>100</td></tr> <tr> <td>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6.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신설) (신설)</td><td></td></tr> <tr> <td>7.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td><td>50</td></tr> <tr> <td>8.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td><td>50</td></tr> <tr> <td>9.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td><td>50</td></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100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50	6.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50	(신설) (신설)		7.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8.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9.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50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대상</th><th>감면율 (%)</th></tr> </thead> <tbody> <tr> <td>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td><td>100</td></tr> <tr> <td>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td><td>100</td></tr> <tr> <td>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6.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7.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단, 임산부 엘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에 한함)</td><td>50</td></tr> <tr> <td>8.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td><td>50</td></tr> <tr> <td>9.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td><td>50</td></tr> <tr> <td>1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td><td>50</td></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100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50	6.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50	7.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단, 임산부 엘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8.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9.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1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50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100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50																																												
6.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50																																												
(신설) (신설)																																													
7.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8.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9.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50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100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50																																												
6.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50																																												
7.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단, 임산부 엘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8.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9.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1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50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 비고 : (현행과 같음)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
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100
3.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80
9.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0.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50
(신 설) (신 설)	
1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20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 시 간 초 과 시 부 터 부 과되 는 주 차요 금의 경우 50)

※ 비교: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100
3.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80
9.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0.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50
11.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산부 열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	50
12.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20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 시 간 초 과 시 부 터 부 과되 는 주 차요 금의 경우 50)

※ 비교: (현행과 같음)